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결 정 문

사건번호: **KR-1200062**
신청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신청인 : **Admin**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현대캐피탈 빌딩

대리인 : 변호사 김용갑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23 세양빌딩

피신청인: Admin

대구시 수성구 황금1동 롯데캐슬골드파크 1408-201

분쟁 도메인이름은 “hyundaecapital.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오늘과 내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코오롱 디지털타워빌라트 13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2.1.17.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DNDRC) 서울사무소 (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2.1.17.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2.1.17.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2.1.17.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 ‘규정’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2.1.19.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2012.1.19.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2.2.8. 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2.2.8.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미제출통지를 2012.2.9. 피신청인에게 하였다.

2012.2.9. 센터는 이덕재 조정위원회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12.2.9.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 2012.2.10.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3. 12. 설립한 ‘(주)현대오토파이낸스’ 가 1999. 1. 상호를 ‘현대캐피탈(주)’ 로 변경한 할부금융회사로서 ‘현대캐피탈’ 과 ‘Hyundai capital’ 을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들(이하 ‘이 사건 표장’ 이라고 한다)을 ‘할부판매금융업’ 등의 서비스업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인데, 분쟁도메인이름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직장인 대출, 무담보 대출, 용자,

급전, 승용차 할부, 승용차 대출, 할부, 대출 신용카드' 등의 영업에 대한 광고문구 및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은, (i) 분쟁도메인이름의 요부인 'hyundaecapital' 은 한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신청인의 영문상호 및 영업표지인 이 사건 표장과 유사하고, (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였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B. 피신청인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도메인이름의 유사

첨부자료 1 내지 9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분쟁 도메인이름은 이 사건 표장의 구성 중 ‘hyundai’의 끝모음 ‘i’를 ‘e’로 변경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은 이 건 조정신청 당시까지 분쟁도메인이름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에 ‘직장인 대출, 무담보 대출, 용자, 급전, 승용차 할부, 승용차 대출, 할부, 대출 신용카드’ 등의 영업에 대한 광고문구 및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있었다. (3) 신청인은 1993. 12. 설립한 ‘(주)현대오토파이낸스’가 1999. 1. 상호를 ‘현대캐피탈(주)’로 변경한 할부금융회사이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을 ‘할부판매금융업’ 등의 서비스업에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일 보다 약 4년 정도 앞서 서비스표로 등록하기 시작하여 30여건의 등록서비스표를 보유하고 있다. (5) 신청인은 1996년부터 할부금융업을 시작하였으며,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일 이전인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영업수익이 10조 5,391억원에 달한다. (6) 신청인은 기업 PR광고를 비롯하여 출시한 금융상품에 관하여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다양한 광고를 활발히 한 결과 국내 유수의 일간지로부터 광고, 마케팅, 브랜드 관련 상을 수십 회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 한국능률협회 산업별 브랜드파워 금융·대출전용카드 부문 1위, 2004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할부금융 부문 1위, 2002, 2003, 2004년 국가 고객만족도(NCSI) 할부금융 부문 각 1위를 차지하였고, 1998. 12.11. hyundaicapital.com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을 상호 및 영업표지로 널리 사용하여 왔고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분쟁도메인이름은 이 사건 표장의 구성 중 ‘hyundai’의 끝모음 ‘i’를 ‘e’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달리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hyundaecapital’ 은 신청인의 상호이고 분쟁대상도메인이름의 등록일 이전에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한 서비스표이므로 이와 극히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을 피신청인이 우연히 등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 당시까지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직장인 대출, 무담보 대출, 용자, 급전, 승용차 할부, 승용차 대출, 할부, 대출 신용카드’ 등의 영업에 대한 광고문구 및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은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되팔아 상업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hyundaecapital.com 을 이전 할 것을 결정한다.

이덕재
1인 조정인

결정일: 2012년 2월 28일